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32호

#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4월 4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 4. 4.~2023. 4. 17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빛고을무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	720-00- 02346	0178220274100003133	₩3,862,500	광주 남구 군분로 83, 2층
2	김선명	1988.0.28.	0178220274100001457	₩3,952,500	광주 서구 상무대로 1036
3	주식회사 더 채움	200111- 0429766	0178220274100003600	₩3,952,500	광주 서구 마북북개로 91, 2층
4	(주)크레디트컴퍼니	210111- 0140740	0178200274100007600	₩5,145,0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1, 6층
5	한현근	1988.0.22.	0178220274100002631	₩3,952,500	전남 여수시 웅천로 83, 1층
6	차종철	1941.0.02.	0178220274100003431	₩18,972,000	전남 순천시 중앙초등 1길 7
7	최대운	1996.0.06.	0178220274100000130	₩3,907,5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45
8	주식회사 에스엔피컨설팅	200111- 0426580	0178210274100003955	₩4,087,500	광주 남구 봉선로 1, 1층
9	채현구	1993.0.05.	0178230274100000944	₩10,227,270	대전 중구 계백로 1571 번길 35
10	농업회사법인 하루그룹주식회사	210111- 0124306	0178200274100004269	₩11,595,000	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74
11	주식회사 디케이	210111- 0152802	0178220274100000020	₩3,997,5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 1길
12	김희영	1975.0.17.	0178210274100003250	₩4,357,500	전북 익산시 선화로 13길
13	권남건	1990.0.09.	0178220274100003976	₩18,540,000	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동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최영근	1973.○.18.	0178220274100002883	₩10,540,000	광주 북구 용봉로 84-10
15	강신태	1969.○.21.	0178220274100002574	₩3,952,500	전남 여수시 웅천로 90
16	황덕전	1947.○.07.	0178220274100003432	₩18,972,000	전남 여수시 여순로 1022-51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☎ 062-457-1596, 159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